

인증서갱신 이용안내



가. 인증서갱신이란?

설비조합 온라인지점을 이용하기위해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던 인증서가 만료되어 재발급 받은 경우 또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 인증서를 설비조합에 등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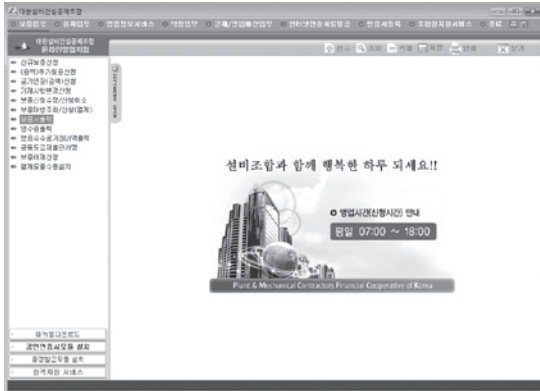
나. 갱신방법

설비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인증서갱신을 클릭하거나 온라인지점에서 타기관인증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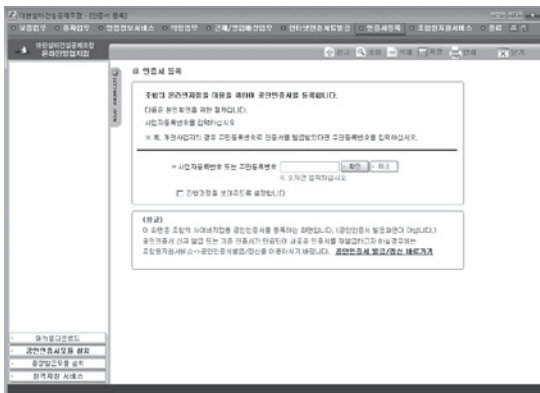
1) 인증서 갱신 선택

- ①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갱신”을 클릭

② 온라인지점에서 “인증서등록”을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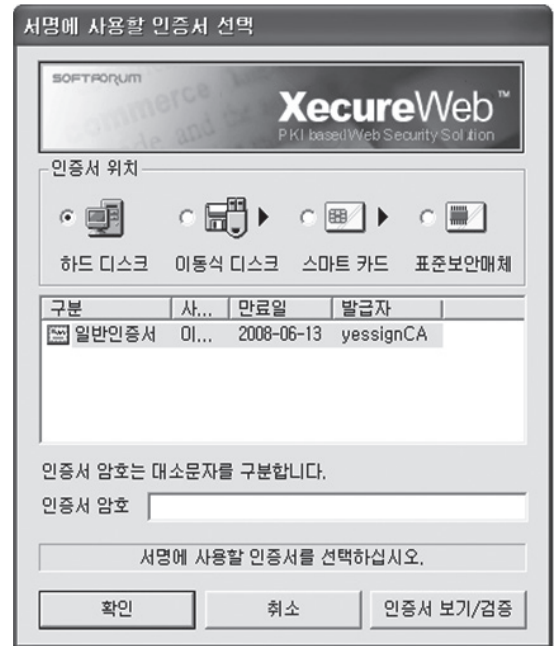


2) 타기관인증서를 등록하는 화면



3)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혹,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서를 발급 받았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십시오)

4)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는 인증서가 나타납니다.



5) 등록할 인증서를 선택하신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정상적으로 갱신이 완료됩니다. 갱신 완료 후 온라인지점이 종료되며 온라인 지점 재접속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참고사항

※ 여러개의 인증서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후 온라인지점 이용시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조합업무 안내(1)



이번 호 부터는 조합업무사항을 테마별로 조합원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보증제도(보증규정시행세칙 제3조의 8)

가. 소액보증제도란

- 조합원들의 출자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고자
-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의 건당 보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일반보증의 기본한도와 별도로, 입찰보증 한도 (7배)중 4배 범위 내에서
- 계약과 하자보수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나. 추가보증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반적인 보증기간의 연장 등은 문제되지 않으며
- 계약금액 증액으로 추가보증서 발급 시에는 당초 보증금액과 합산한 보증금액이 건당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다. 이용가능한 대상보증

-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라. 이용방법

- 한도거래용 채무약정 체결 시 소액보증한도를 약정하여야 함

마. 보증수수료

- 계약보증요율 : 년 0.8%
- 하자보수보증 요율 : 년 0.6%
- 최저 수수료(건당) : 6,000원

2. 저가공사 보증심사제도

가. 심사대상

- (1) 대상보증 : 계약보증 및 선금금보증
- (2) 심사대상

-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원·하도급)한 30억원 이상의 공사 중 입찰참여자 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가로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 입찰에 참여한 자가 저가로 제보한 공사
-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수주한 공사로서 저가 소지가 있는 경우
- 저가 판정받은 조합원이 6개월 이내 보증신청 하는 공사(최소한 2회 이상 심사)
- 지점장이 저가우려가 있어 채권보전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

※ 저가심사대상 예외사유

- ① 보증서 발급 후 계약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30억원 초과

- ② 낙찰된 후 60일이 경과하여 저가공사로 신고된 경우
- ③ 보증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저가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기 발급한 보증서를 취소 또는 반환한 때
- ④ 고액보증심사 및 선급금공동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3) 입찰자료파악

-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보증신청 시 조합원이 직접 보증신청 화면에서 입찰자료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고, 특히 저가소지가 있을 때에는 저가심사를 한 후 보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저가공사 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공사의 보증서발급을 유보한다. 다만, 저가공사 심사 전에 심사지연 등으로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때에는 보증서를 발급한 후 심사할 수 있다.

나. 저가판정 기준

(1) 저가판정방법

낙찰금액을 입찰참여자의 평균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저가공사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협력 업체등록을 위한 저가수주, 타 시공현장의 준공 후 발생된 잔여자재 및 보유장비 활용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및 낙찰률

- 평균입찰금액 : 3개사 이상 입찰참여자의 입찰금액이 파악된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2개사 이상)의 평균금액
- ※ 낙찰자가 2개사 이하이거나, 입찰금액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부심사를 진행함
- 낙찰률 : 낙찰금액을 평균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

(3) 저가판정 등급

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낙찰률	90%미만 87%이상	87%미만 84%이상	84%미만 81%이상	81%미만 78%이상	78%미만

다. 저가공사 심사 등

(1) 심사방법

- 지점장은 낙찰자에게 저가공사 심사에 필요한 입찰참여자 명단을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고, 입찰참여자에게는 입찰금액을 3일 이내 제출하도록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함. 자료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내용증명에 의하여 최종의사 확인

(2) 처리기한

- 신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자료 회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

(3) 심사결과통지

- 심사결과를 낙찰자 및 심사자료를 제공한 입찰참여자에게 우편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지하여야 함
- 저가공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평균입찰금액, 평균입찰금액 대비 낙찰률, 판정등급, 담보징구 등의 관련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 도착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라. 저가공사 등급별 수수료 할증 및 담보징구

(1) 담보물 징구

등급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보증금액 대비 물적담보	10%	15%	20%	30%	40%
인적담보	조합원 1인 이상 또는 자연인 1인 이상				

- 조합원 : 지분액 한도로 입보 (지분액 5억원 이하는 5억원 한도)
- 자연인 : 1인당 3억원 한도로 입보 (재산세 납세실적 10만원 이상 또는 5만원 이상 2인, 약정연대보증인 제외)
- ※ 재산세 : 과세특례, 지방교육세 등은 제외한 순수 재산세
- 물적담보 : 예 · 적금, 부동산 등

신용등급에서 1등급 상향제한

- 낙찰자가 입찰참여자의 명단제공 등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제한

(나) 저가수주 반복 조합원에 대한 제재

- 1회 : 차기 신용평가 때 1회에 한하여 신용등급 1등급 상향제한
- 2년 이내 2회 : 차기 신용평가 때 1회에 한하여 신용등급 하향조정 및 1년간(판정일 기준) 모든 보증수수료의 20% 할증(판정일 이전 발급된 보증에 대한 공기연장은 제외)
- 2년 이내 3회 이상 : 6개월간(판정일 기준) 업무거래 제한

(2) 허위신고 및 저가판정 조합원에 대한 제재사항

(가) 허위신고에 대한 제재

- 저가신고 내용이 고의성이 있는 허위신고이거나, 입찰참여자가 입찰자로 제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산출된

마. 저가심사 산출[예시]

(단위 : 백만원)

계약금액	입찰자	입찰자료	평균금액	낙찰률	저가등급	비고
3,200	2	3,250				본부심사
3,200	3	3,390	3,385	94.5%		저가공사 아님
		3,380				
3,200	4	3,200	3,573	89.6%	1등급	보증금액의 10% 담보징구
		3,650				
3,200	5	3,600	3,685	86.8%	2등급	보증금액의 15% 담보징구
		3,470				
3,200	5	3,200	3,965	80.7%	4등급	보증금액의 30% 담보징구
		3,840				
3,200	5	3,800	3,965	80.7%	4등급	보증금액의 30% 담보징구
		3,600				
3,200	5	3,500	3,965	80.7%	4등급	보증금액의 30% 담보징구
		3,980				
3,200	5	3,970	3,965	80.7%	4등급	보증금액의 30% 담보징구
		3,960				
3,200	5	3,950	3,965	80.7%	4등급	보증금액의 30% 담보징구
		3,200				

3.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제도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이란

조합원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해외건설 촉진법”에 의거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보증 제도이며,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법인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대상 보증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 보증

다. 발급 기준

- 해외현지법인 명의로 보증서를 발급하되 신용등급,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요율, 보증제한 사유 등 기존 조합원의 업무거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발급 자격
 - 조합 신용등급 BB등급 이상(보증금액 이상의 담보제공 시 제외)
 - 해외현지법인 출자비율 49% 이상(현지법인 설립 신고서의 투자비율)
 - 현지법인 자격 : 해외건설협회에 신고된 법인만 가능

라. 발급 방법

(1) 약정체결

한도거래용채무약정서와는 별도로 개별거래용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여 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 약정인 : 조합원 및 해외현지법인(공동약정)
- 연대보증인

- 조합원의 대표자 또는 최대주식보유자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또는 순수 재산세 납부실적 10만원 이상인 제3자 중 1인으로 외국인은 제외

○ 징구 서류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본인확인증,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제3자 입보 시)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해외현지법인 설립(인수) 증빙서류

(2) 보증서 발급

○ 징구 서류


- 착공계, 계약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내역서
- 보증채권자가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인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등 증빙서류
- 현장위치도, 현장 임·직원 연락처
- 한국은행 신고(허가)필증 원본

- 신청 방법 : 현지법인 서류심사 등을 감안하여 청구 발급(인터넷 불가)

○ 영문표기 보증서로 발급

- 원화표기가 원칙이나 외화보증금액 병기 가능

4. 보증의 해제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해제합니다. 

보증별	해제사유
입찰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때 • 입찰일 경과 후 당해보증서가 반환된 때 • 조합이 당해공사에 대한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때 • 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등 계약체결사실의 통지가 있는 때 • 당해 조합원에게 낙찰되지 아니하였음을 조합이 확인한 때 • 당해 조합원이 불낙찰신고서를 제출한 때 • 정액입찰보증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230일이 경과한 때 또는 분실신고서를 제출한 때
계약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 또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때 • 조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다른 보증기관에서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준공된 사실을 확인한 때
공사이행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원)이 있는 때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및 기타 서류에 의하여 당해공사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 • 조합 또는 타보증기관이 당해계약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때 • 보증이행업체가 시공한 경우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한 때 •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한 때
하자보수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 •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원을 제출한 때
선급금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정산확인원 또는 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한 때 •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금 지불을 확인한 때 • 당해계약에 대하여 조합 또는 타 보증기관의 하자보증서를 발급한 후 90일(보증채권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때. 단, 하자 보수보증 선발급 시에는 준공 후 90일이 경과한 때 •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공사 기성실적확인서에 의거 그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유보기성금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에 의해 그 준공을 확인한 때
어음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해제통지서 또는 어음보증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한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된 때 • 보증채권자의 하도급대금(준공금)수령 확인원을 제출한 때 • 하도급대금 영수증(전부지급)을 제출한 때 •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확인서를 제출한 때
포괄대금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보증이 모두 해제된 후 포괄보증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때 • 포괄보증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접수된 때 ※ 개별보증은 보증기간 종료 후 30일 경과 시 또는 개별대금지급보증 책임소멸확인원을 제출한 때 해제 가능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된 때 • 보증채권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완제확인원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전부 지급을 확인한 때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확인서를 제출한 때
손해배상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채권자의 준공확인서를 제출한 때 • 보증채권자의 실적증명서 등에 의하여 준공을 확인할 수 있을 때 • 조합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한 때
인·허가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에 따른 의무이행 완료증명서를 제출한 때
자재구입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책임소멸일이 종료(보증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90일)된 후 15일이 경과한 때 • 보증채권자의 자재대금수령확인원을 제출한 때
임시전력사용 예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전력사용료 완납증명원이 있는 당해 임시전력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때
리스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보증기간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한 때 • 보증채권자의 리스보증책임완료확인원 또는 규정손실금잔액확인원에 의하여 보증책임의 전부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한 때

※ 계약·하자보수·선급금 보증이 위의 해제사유에 해당하여 인터넷으로 해제신청하시면 조합에서 확인 후 해제하여 드립니다.

최신노동 판례 소개



1. 하기 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위와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 2. 13. 2011다86287

판시사항

[1]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을이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사안에서, 을이 하기휴가비 지급대상인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하기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의하여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통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2]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하기휴가비를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 을이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한 사안에서, 을은 파업으로 말

미암아 갑 회사와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었을 뿐 근로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으로 정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을이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단체협약상 하기휴가비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기준일 현재 휴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회사가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기준일 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하기휴가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하기휴가비 등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위와 같은 불확실한 조건이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2.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협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를 지급하도록 할 경우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2014. 5. 29. 2012다11687 임금

판결요지

1. 정기상여금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복직 시점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그것이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에 차등을 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중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임금이 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8.20. 대법 2013다 10017

판결요지

1)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위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승무원들에게 1일당 2,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한 경우, 위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4.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제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대법원 2014. 1. 23. 2013다 71180 추심금

판결요지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무효),

2. 위 법률상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 246조 제1항 제4호의 관계(특별법과 일반법)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제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제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제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위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